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135
-----------	------

2017. 11. 2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7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7.11.28.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 제안이유

가. 마곡산업단지는 차세대 서울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마곡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1,110,805 m^2 규모로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임('08년 12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나. 일반산업단지는 통상 공장 중심의 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마곡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이면서 본격적인 제조활동을 불허하고 R&D 중심의 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다. 그동안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직접관리 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기업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입주기업 사후관리 등 관리업무의 성격이 변화되고 연구개발 관련 사업계획 준수 등 관리업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라. 또한 마곡산업단지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융복합 R&D 클러스터 구축,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음

마. 이에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곡산업단지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 관리권자는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가능
 - 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 범위를 결정

※ 관리기관의 자격 (산집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7)

- ▶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사단법인),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등

▶ 필요성

- 단지 조성·분양 업무보다는 연구면적 준수 등 관리업무의 성격변화 및 사후관리 업무량 증가
- 단지 조성 목표달성을 위한 R&D 지원사업 추진단계 준비
- 시와 관리기관 간 업무분담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

- 마곡산업단지는 市와 국내에서 경험치 못한 창의적 서비스 제공 필요
- 연구기능 활성화·R&D연계 사업화시설 관리 등 타 산업단지에 비해 관리 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시설 : 마곡 광장, 공공산업지원시설
- 위탁사무 : 관리업무 중 관리권자(서울시장) 직접수행 업무를 제외한 관리업무

※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의 업무내용

관리권자 : 서울시	관리기관 : 수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 중요사항 관리 및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리, 행정처분 등 ○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산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 기타 관리권자로서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기업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홍보, 강소기업 유치 등 ○ 입주계약 체결 및 산집법 준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등 ○ 입주기업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준공, 사업계획 준수 관리 등 ○ 공공시설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산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 기업지원 및 R&D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지원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마곡산업단지 내 공공산업지원시설 및 광장

-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추진중(’20년 말 완공예정)
- ‘마곡광장’ 조성중(’18.5월 완공예정)

마. 민간위탁 기간 : 2년 8월(’18.4. ~ ’20.1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서울주택도시공사)

※ 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지원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SBA) 연계 협력

< 수의계약 사유 >

- 산업단지 조성관리와 병행하는 초기관리에 적합
 - '18.12월 산업단지 준공 예정으로「관리자와 시행자의 역할」병존
- 토지 소유주로서 미매각 부지 활용 공공성 확보 가능
 - 유보지 관리 및 공공주도형 지식산업센터 등 H/W 구축에 우위
- 계약관리 등 사업의 일관성 유지 및 사업추진 의지
 - 분양계약의 주체로서 그간 입주기업 건축공사 등 과정에 직간접 관여
 - 산업단지 관리를 포함한 산업거점 개발 관리 업무 확대(공사 조례개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701백만원('18.4.~12.)
- 산출근거

구 분	예산액(백만원)	주요내용
합 계	1,701	
인건비	533	11명 기준 기본급, 제수당
운영비	432	임차료,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736	융복합 R&D 지원 등 5개 사업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4.1.21.)
 제15호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관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2.12.12, 2014.12.30, 2016.1.2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18년 예산 편성 필요

3.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동의안은 마곡산업단지 운영·관리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장의 2017년 10월 16일 제출하여 2017년 10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위탁기간은 2년 8개월이고('18.4.~'20.12.), 수의계약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위탁사무는 시설관리를 비롯해 기업유치·기업지원 등을 포함한 사무임.

조직규모는 2개팀 11명이고(붙임1), 위탁비용은 '18년에 한해 17억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서울시의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14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고1), '19~'20년 위탁비용은 당초 산정하지 않고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민간위탁비 연평균 16억 2천 9백만원을 추계하여 자료 제출함(붙임2).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마곡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함2).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 타당성과 수의계약 적절성 등은 마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비용 등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련 고유업무와 위탁업무

- 마곡산업단지는 현재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69%로, 미분양용지의 처분과 입주기업 선정, 준공 시설의 유지관리, 입주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활성화 등 수행해야 할 업무가 복합되어 있고,

1) 사업비 중 '공공산업지원시설 운용방안 연구용역' 3억원과 자산취득비 7천8백만원 삭감. '공공산업지원시설 운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19~'20년 민간위탁비를 산출코자 하였으나, 해당 용역비 삭감으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비(연평균 16억 2천9백만원)를 추계함. 업무용차량·집기비품 등 자산취득비는 관리권자(서울시)가 집행 예정

2)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가운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사업 범위를 산업단지 관리업무까지 포함·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SH공사 조례)가 개정되면서('17.9.), 마곡산업단지 관련하여 SH공사의 고유사업(SH공사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과 서울시 위탁업무(SH공사 조례 제21조제1항제16호)가 혼재될 우려가 있음.

<p>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8.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11.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2. 주거복지사업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15.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7.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해외건설사업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20.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

- SH공사의 고유사업은 서울시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 예산으로 수행되는 반면, 위탁업무는 민간위탁금으로 수행되는 바, 고유사업과 위탁업무가 명료히 구분되지 않으면 출자금과 위탁금의 형식으로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예산이 중복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 SH공사의 마곡산업단지 재정투자 가능성이 수의계약 위탁 결정에 주요 판단기준이라고 보여지는데, 마곡산업단지의 개발이익이 마곡산업단지 관리에 환원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보다는, 마곡산업단지 관련한 SH공사의 고유사업과 위탁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SH공사의 재정투자계획을 구체화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명시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서울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 협력

-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리기본계획·공공시설기본계획 등 주요 사항의 검토·승인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관리업무는 SH공사에 위탁하되, SH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간 업무협약³⁾을 토대로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 클러스터 육성 및 R&D 지원 등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행토록 계획함(붙임3).
- 마곡산업단지의 물리적 운영과 내용적 운영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 실정으로는 양 기관 모두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 독자적 업무

3)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 간 관련 업무협약 체결('16.6.22.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간 마곡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육성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⁴⁾ 업무 협력은 필수적인 가운데, 업무 협약만으로 사업발굴과 업무분담·조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업무책임 등이 명확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서울시의 업무조정과 갈등관리 역할이 중요함을 유념해야 할 것임.

□ 위탁기간과 위탁비용

- 민간위탁금은 당초 위탁 첫 해인 '18년만 인건비·운영비 중심으로 편성하고, '19~'20년의 위탁비용은 관련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기업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해당 용역비가 삭감되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비를 추계한 결과, 연평균 16억 2천9백만원으로 산정되었음.

- 위탁기간에 상응한 위탁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추진은 서울시가 위탁비용의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에는 사전에 위탁기간과 위탁비용 산정이 합일되어 심사의 준거가 확실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위탁비용 산정과 관련된 용역비⁵⁾가 '18년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수탁기관이 위탁비용을 산정하는 모순된 상황을 피하고, 연간 위

4) SH공사는 최근 산업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산업육성 등의 업무 경험은 없는 상태이고, SBA는 산업 진흥 업무는 수행 경험이 있으나 부동산 개발 및 운영 경험은 일천함(출처: 서울시 자문회의).

5) 공공산업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3억원) : 당초, 민간위탁비 산정 등이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음.

탁비 규모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사전 추계를 하는 결과로 이어져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마곡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의 경우, 마곡산업단지 관리주체로 검토될 수 있는 SH공사가 관련 용역을 직접 발주·관리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이해관계 투영 가능성 등 용역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초래되었고,

이번 민간위탁비 산정 관련 용역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수탁기관인 SH공사가 위탁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용역의 신뢰성 문제가 반복될 수 있었던 만큼,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은 가급적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비 산정 등 서울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을 용역에 의존하는 행태는 개선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동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35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마곡산업단지는 차세대 서울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마곡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1,110,805 m^2 규모로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임('08년 12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 나. 일반산업단지는 통상 공장 중심의 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마곡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이면서 본격적인 제조활동을 불허하고 R&D 중심의 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다. 그동안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직접관리 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기업임주가 본격화되면서 입주기업 사후관리 등 관리업무의 성격이 변화되고 연구개발 관련 사업계획 준수 등 관리업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라. 또한 마곡산업단지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융복합 R&D 클러스터 구축,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음
- 마. 이에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곡산업단지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 관리권자는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가능
 - 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 범위를 결정

※ 관리기관의 자격 (산집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7)

- ▶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사단법인),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등

□ 필요성

- 단지 조성·분양 업무보다는 연구면적 준수 등 관리업무의 성격변화 및 사후관리 업무량 증가
- 단지 조성 목표달성을 위한 R&D 지원사업 추진단계 준비
- 시와 관리기관 간 업무분담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
- 마곡산업단지는 市와 국내에서 경험치 못한 창의적 서비스 제공 필요
- 연구기능 활성화·R&D연계 사업화시설 관리 등 타 산업단지에 비해 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시설 : 마곡 광장, 공공산업지원시설
- 위탁사무 : 관리업무 중 관리권자(서울시장) 직접수행 업무를 제외한 관리업무

※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의 업무내용

관리권자 : 서울시	관리기관 : 수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 중요사항 관리 및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리, 행정처분 등 ○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산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 기타 관리권자로서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기업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홍보, 강소기업 유치 등 ○ 입주계약 체결 및 산집법 준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등 ○ 입주기업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준공, 사업계획 준수 관리 등 ○ 공공시설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산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 기업지원 및 R&D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지원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마곡산업단지 내 공공산업지원시설 및 광장

-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추진중(’20년 말 완공예정)
- ‘마곡광장’ 조성중(’18.5월 완공예정)

마. 민간위탁 기간 : 2년 8월(’18.4. ~ ’20.1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서울주택도시공사)

※ 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지원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SBA) 연계 협력

< 수의계약 사유 >

- 산업단지 조성관리와 병행하는 초기관리에 적합
 - ’18.12월 산업단지 준공 예정으로 「관리자와 시행자의 역할」 병존
- 토지 소유주로서 미매각 부지 활용 공공성 확보 가능
 - 유보지 관리 및 공공주도형 지식산업센터 등 H/W 구축에 우위
- 계약관리 등 사업의 일관성 유지 및 사업추진 의지
 - 분양계약의 주체로서 그간 입주기업 건축공사 등 과정에 직간접 관여
 - 산업단지 관리를 포함한 산업거점 개발 관리 업무 확대(공사 조례개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701백만원('18.4.~12.)
- 산출근거

구 분	예산액(백만원)	주요내용
합 계	1,701	
인건비	533	11명 기준 기본급, 제수당
운영비	432	임차료,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736	융복합 R&D 지원 등 5개 사업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4.1.21.)

제15호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2.12.12, 2014.12.30, 2016.1.2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18년 예산 편성 필요